

• 새로운 연수 • 튼튼한 연수 • 따뜻한 연수



연수구보



“꿈을 이루는
행복한 연수”

발행·편집인:연수구청장 / 발행처:인천광역시 연수구 / 주소: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호 (우)406-723 ☎ 749-7403 / FAX 749-7399

선	기 관 의 장
람	

구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

부록 제833호 2014. 11. 10.(월)

【고 시】

- 인천광역시연수구 고시 제2014-86호(도로명주소 고시) 1
- 인천광역시연수구 규칙 제2014-87호(인천도시관리계획(연수지구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어린이공원)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2

【공 고】

- 인천광역시연수구 공고 제2014-926호(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5
- 인천광역시연수구 공고 제2014-927호(연수구청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자
모집공고)14
- 인천광역시연수구 공고 제2014-930호(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20
- 인천광역시연수구 공고 제2014-931호(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30
- 인천광역시연수구 공고 제2014-934호(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37

회							
람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 폐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 11. 10.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새말로96번길 26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도로명주소 폐지사유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569-8	인천광역시 연수구 새말로96번길 26	2014.11.10	건축물 멸실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민원지적과(☎749-7594~5)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인천도시관리계획(연수지구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어린이공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인천도시관리계획(연수지구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어린이공원)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결정 및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연수구청 재무회계과(☎ 749-7373) 및 도시계획과(☎ 749-865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4. 11. 10.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1. 결정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 및 마목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연수지구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어린이공원)의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2. 위 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535-3번지 일원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 변경없음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 변경없음

도면 표시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①	연수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연수구 선학·연수·청학동 일원	6,209,946.2	

2)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부분 : 변경

(1) 용도지역 · 지구에 관한 결정 조서 : 변경없음

■ 용도지역 결정 조서 :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총 계		6,209,946.2	100.0	
소 계		4,518,361.5	72.8	
주거지역	일반주거	-	-	
	제1종일반	-	-	
	제2종일반	2,504,283.8	40.4	
	제3종일반	1,981,177.1	31.9	
	준주거	32,900.6	0.5	
소 계		310,942.9	5.0	
상업지역	중심상업	165,233.1	2.6	
	일반상업	145,709.8	2.4	
소 계		1,380,641.8	22.2	
녹지지역	자연녹지	1,311,766.3	21.1	
	보전녹지	68,875.5	1.1	
	생산녹지	-	-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 변경

■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 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58	함박공원	어린이 공원	연수구 연수동 535-3번지 일원	5,028.5	-	5,028.5	1988.11.14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 시번호	공원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58	함박공원	• 공원 형태 변경 (면적 변경 없음)	• 연수1동 주민자치센터 이전에 따른 어린이 공원 형태 변경

■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 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7-2	공공 청사	주민센터	연수구 연수동 535-3번지 일원	1,168.3	-	1,168.3	1995.1.7	

■ 공공청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7-2	공공청사 (주민센터)	• 공공청사 위치 변경 (면적 변경 없음)	• 연수1동 주민자치센터 이전에 따른 공공청사 위치 변경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부분 : 변경없음

4. 지형도면 : 게재생략(열람 장소에 비치)

5.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재무회계과(☎ 032-749-7373)
및 도시계획과(☎ 032-749-8652)

인천광역시연수구 공고 제2014 - 926호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년 11월 05일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안전행정부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표준안)」 일부개정 (2014. 9. 2 시행)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징계의결 요구권자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 정상참작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을 추가 명시함 (안 제2조, 안 제7조)
- 수사기관 결정 통보과 관계없이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징계기준에 따라 의결을 요구하도록 함(안 제2조의2)
-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22조에 따라 등록의무자에 대하여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위반으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비위 및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은 비위의 경우에도 공적에 의한 징계감경을 할 수 없도록 명시함(안 제4조)
- 기능직 폐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함(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 11. 25(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동춘동 923-5번지)
- 연 락 처 : 전화 749-7172 FAX 749-7159
- 홈페이지 : <http://www.yeonsu.go.kr/>

라. 제출서식

제 정 (안)	사 유(구체적으로)
	(필요시 관련 근거자료 첨부)

4.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안
-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1】

인천광역시연수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공적”을 “공적,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으로 한다.

제2조의2 제1호의 “내부종결 처리”를 “내부종결처리, 다만, 「지방공무원법」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적용”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의 “별표 1적용”을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적용”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의 “별표 1적용”을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적용”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어느 하나에”를 “1에”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비위 및 음주운전 사건 비위”를 “비위 및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사건 비위”로 하며, “성매매에”를 “성매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22조에 따라 등록의무자에 대하여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위반으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비위 및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은 비위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의 “지도사와 기능직 공무원은”은 “지도사는”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의결주문란에 “불문” 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 라고 적는다” 는 “의결주문란에 “불문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 라고 적는다” 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관련도와” 는 “관련도,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처리의 적극성,” 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의2, 제4조제1항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2조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혐의자에 대한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u>공적</u> , <u>뇌우치는 정도</u> , 그 밖에 <u>정상</u> 등을 참작하여 별표1의 징계기준, 별표1의2의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 별표1의3의 음주운전 징계기준 및 별표1의4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라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제2조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① ----- ----- ----- <u>공적, 근무성적, 청렴도, 업무처리능력,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u> , ----- ----- ----- -----.
제2조의2 (수사기관이 통보한 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혐의없음 또는 죄가안됨 결정: <u>내부종결 처리</u> 2. 공소권없음 결정, 기소중지 결정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제2조의2 (수사기관이 통보한 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 <u>내부종결처리. 다만, 「지방공무원법」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적용</u> 2. ----- ----- -----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u>별표 1</u> 적용 3. 기소유예 결정, 공소제기 결정 및 기타: <u>별표1</u> 적용	----- <u>별표 1부터 별표 3까지</u> 적용 3. ----- -----<u>별표 1부터 별표 3까지</u> 적용
제3조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① (생 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2의 문책 순위 <u>어느 하나에</u>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해당 비위를 발견하여 보고 하였거나 이를 적법·타당하게 조치한 징계등 사건 2.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징계등 사건 3. 철저하게 감독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감독자의 징계사건	제3조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 -----<u>1에</u>----- ----- ----- -----.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제4조 (징계의 감경)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3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따른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하며 지	제4조 (징계의 감경) ① ----- ----- ----- ----- ----- ----- ----- ----- ----- -----

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인 <u>비위</u> 및 <u>음주운전 사건 비위</u>,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u>성매매</u>에 대하여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 (생략) 2. 정부표창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다만, 비위행위당시 6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 및 <u>지도사와 기능직공무원</u>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 광역시장, 도지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u>비위</u> 및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사건 비위,----- ----- -----<u>성매매</u>,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22조에 따라 등록의무자에 대하여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위반으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비위 및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은 <u>비위에</u> 대하여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 (현행과 같음) 2.----- ----- -----<u>지도사</u>는----- ----- ----- -----
제6조 (의결서의 작성요령) ① (생략) ② 제1항의 경우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불문으로 의결한 때에는 징계등 의결서의 <u>의결주문란</u>에 “<u>불문</u>”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고할 것을	제6조 (의결서의 작성요령) ① (현행과 같음) ② ----- ----- -----<u>의결주문란</u>에 “<u>불문으로 의결한다</u>.” 다만,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 라고 적는다.

권고한다 라고 적는다.	
제7조 (징계의결등 요구권자의 의견기 재요령) ① (생 략) ② 제1항의 경우에 징계의결등 요구권 자는 인사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공무 원 징계의결등 요구서에 별표2의 업 무의 성질에 따른 업무와의 <u>관련도</u> <u>와</u> 징계등 혐의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뉘우치는 정도, 기타의 정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관계증 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7조 (징계의결등 요구권자의 의견기 재요령)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u>관련도, 규제개혁 및 국 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 성</u>,----- ----- -----. ③ (현행과 같음)

검 토 의 견 서

관련부서	총무과		
의안명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사항	검 토 내 용	유	무
	1. 관계법령에 위배여부 2. 조례·규칙·훈령·예규등 위배여부 3.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 침해 여부 5. 기타 문제점		
검 토 의 견			

연수구청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수구청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5일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1. 위탁대상 시설현황

시설명	소재지	시설규모	보육정원	개원일자	위탁기간	비고
연수구청 어린이집	연수구 원인재로 115 연수구청 2층(동춘동)	419.48㎡	70명	1999.11.18	2015.01.01 ~ 2019.12.31	

2. 위탁운영기간 : 위탁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3. 위탁운영신청자 자격 요건

○ 공통사항

-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재정 능력과 사회복지사업 수행경험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단체, 개인으로서 보육사업(아동복지사업) 종사경력이 있어야 함
- 법인·단체일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원장 자격이 있는 자를 채용 또는 내정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개인일 경우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1조에 규정한 원장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함

○ 법인·단체일 경우

- 공고개시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법인(또는 단체)의 주사무소가 있고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관련법에 등록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단체

- 정관의 목적사업에 사회복지사업, 보육사업, 아동복지사업 등 관련 사업내용이 명시된 경우에 한함
- 공고개시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대학(교)가 소재하고 있고 사회복지 또는 영유아보육 관련학과가 설치된 대학(교)

○ 개인일 경우

- 공고개시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4. 신청제외대상

-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동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최근 5년 이내 보육과 관련되는 법령 위반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운영체(자)
- 법인·단체의 주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위탁체 명의로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 위탁 신청자가 개인일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단, 고용된 원장의 경우 제외)
- 타인(법인, 단체 포함)의 명의를 빌려 위탁운영 하려는 자

5. 위탁 운영 조건

- 위탁범위 :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
- 운영재원 : 정부지원 및 영유아보육료 등
- 종사자 보수 : 국공립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 준용
- 보 육 료 : 정부지원 보육료 단가 준용
- 취약보육(영아, 장애아, 시간연장 등)아동 수요발생시 필수운영
- 시설운영 중 부족경비 발생시 지원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과 시설운영 능력이 있어야 함
-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음

- 원장을 제외한 교직원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용승계 하여야 함
- 어린이집 원장 등 인건비 지원 상한제 적용
 - 원장 65세, 보육교직원 60세까지 지원
 - 지급연령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시 인건비 지원 중단
- 보조금을 비롯한 기타 수익재산(보육료 등)의 활용은 어린이집 운영에만 사용해야 함
- 영유아보육에 관한 법령, 보건복지부의 2014년도 보육사업안내 및 인천광역시 보육사업추진계획, 연수구영유아보육조례, 위탁협약서에서 정하는 제반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 또는 연수구영유아보육조례 제17조 규정에 의거 위탁을 취소할 수 있음.

6. 신청서 접수

- **공고기간 : 2014. 11. 05 ~ 2014. 11. 18 (14일간)**
- **접수기간 : 2014. 11. 17 ~ 2014. 11. 24 (8일간)**
- **접수장소 : 연수구청 가정복지과 (6층)**
- **접수방법 : 근무시간 내 방문접수(09:00~18:00)**
 - ※ 공휴일 접수 및 우편·인터넷·대리접수 불가
 - ※모든 제출서류는 접수기간(2014.11.17~11.24)내 제출하되, 동산 등 기타 재산(은행잔액증명, 유가증권사본 등 증명서)과 부채증명(개인신용정보조회서)은 2014. 11. 18일자로 발급받아 제출
- **신청자 : 대표자 또는 원장내정자(신분증 지참)**
 - ※ 위임장(임의 작성) 제출 시 위임 가능
- 선정심의일 : 별도 통지

7. 제출서류

서 류 항 목	운 영 체			비 고
	법인	단체	개인	
1. 어린이집 위탁신청서	0	0	0	
2. 어린이집 위탁운영 계획서 -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보육사업계획 등 - 특수교육 및 취약보육 운영계획 등 - 시설운영 및 관리·평가에 관한 계획 등 - 2015년 세입 및 세출 예산서 등	0	0	0	- 영유아의 신체, 정서, 언어, 사회성 및 인지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교육내용 - 취약보육계획 1개이상 포함
3. 재정상태 및 화약서	0	0	0	
4. 위탁운영 신청자 현황	0	0	0	
5. 법인 또는 단체 소개서	0	0		별지 작성
6. 법인정관, 등기부등본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	0			
7. 단체등록증 및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		0		
8. 어린이집 위탁운영 이사회 결의서 등	0	0		
9. 2012년, 2013년 법인(단체)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서	0	0		
10. 2012년, 2013년 법인(단체) 총괄예산 결산서	0	0		
11. 이력서(증명사진) 및 자기소개서	0	0	0	법인, 단체의 경우 대표자, 원장 내정자
12. 자격증사본(원본지참)	0	0	0	
13. 졸업증명서(최종학교, 관련학과)	0	0	0	
14. 경력증명서(보육 및 아동복지관련)	0	0	0	
15. 채용신체검사서	0	0	0	법인, 단체의 경우 원장 내정자
16. 인감증명서(법인, 단체의 경우 법인, 단체의 인감)	0	0	0	용도 : 어린이집 위탁 신청용
17. 주민등록등본			0	
18. 건물(등기부 등본-공통) - 아파트, 다세대, 연립 : 공동주택 가격확인원 - 단독주택 : 주택가격확인원 - 상가, 기타 : 세목별납세증명서(비고란 과표 기록)	0	0	0	재산입증자료는 공고 개시일 전일까지의 취득분에 한하여 인정
19. 토지 : 공시지가확인원, 등기부등본	0	0	0	개인(부부 재산)
20. 금융재산 - 예금잔액증명서(2014.11.18기준 발행분) - 개인신용정보조회서(2014.11.18현재 전국은행연합회,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서울신용평가정보 중 발행)	0	0	0	- 법인(법인명의 재산) - 단체(단체명의 재산)
21. 기타 자격증(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유치원정교사)	0	0	0	해당자만 제출
22. 복지 및 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 및 포상, 교육 등 증빙서류 (평가인증 참여확인서, 표창장, 자원봉사, 보육센터 조력활동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0	0	0	

※ 신청서 및 제출서류는 연수구청홈페이지(<http://www.yeonsu.go.kr>)

고시/공고란 참조

※ 제출서류의 발급일자는 공고개시일 이후여야 함

※ 신청서류는 어린이집 위탁신청서를 첫 페이지로 하여 신청서류에 나열한 순으로 1권의 책자로 제본하여 13부 제출(원본 1부, 사본 12부 제출 / 목차·쪽수 명시)

8. 심사기준 및 선정방법

○ 심사기준 : 보건복지부 2014년도 보육사업 안내 적용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권장 표준안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공통심사기준표
- 위탁심사 세부항목별 평가기준안

평가항목	계	어린이집 운영계획	운영체대표및 원장전문성	운영체의시설 운영실적	운영체의 공신력	운영체의 재정능력
배점	100	40	35	10	10	5

○ 선정방법

- 연수구보육정책위원회에서 평가표에 의거 서류 및 면접(대표자, 원장 내정자) 심의 후 결정하며, 다수 운영체가 신청하였더라도 신청운영체가 전부 부적격 시에는 재공고하여 모집
- 개별위원 점수의 최고·최저점수는 점수합산에서 제외하고 평균 70점(소수점 이하 두자리 수까지 계산) 이상의 최다 득점을 받은 운영체로 결정하며 신청자가 단수(한명 또는 한개 법인·단체)일 경우에도 평균 70점 이상이어야 함.
- 결과점수가 동점이 나온 경우에는 어린이집 운영계획, 원장의 전문성, 시설운영실적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면접방법

- 신청한 대표자와 원장내정자(발표 및 응답자)가 함께 출석하여 5분 이내 운영계획 설명과 심의위원 질의응답 순으로 실시하되 법인·단체의 경우

대표자 참석 불가시 해당 법인·단체에 소속된 자로 대표자의 권한위임을 받은자(위임장 지참)의 대리참석 가능(신분증과 재직증명서 등 해당 법인·단체의소속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필히 지참)

○ 선정결과 통보

- 위탁자(체) 선정 익일 개별 통지 및 연수구청 홈페이지 게시

9. 협약체결

○ 수탁운영자로 선정된 위탁체는 지정된 기일까지 연수구와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고, 공증하여야 함(공증에 따른 비용은 수탁자 부담)

※ 지정된 기일까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탁운영자 선정을 무효로 하고, 차순위자와 별도 협약할 수 있음

10. 유의사항

○ 위탁운영조건 등을 사전에 숙지하시고, 사업설명회(현장 설명회)를 별도로 개최하지 않으므로, 어린이집 현장답사가 필요할 경우 개별적으로 답사 후 서류를 제출하기 바라며, 미숙지 또는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신청자는 심의일(별도통지)에 보육정책위원회에 출석하여 어린이집 운영 계획에 대한 소견을 발표하여야 함(불참시에는 신청포기로 간주함).

○ 제출된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공람 또는 추가 보완서류를 제출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을 무효처리함

○ 영유아보육법 및 기타 관련사항의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11. 기타 사항은 연수구청 가정복지과 보육지원팀 담당자(전화 032-749-7751~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 공고 2014 - 930호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11월 5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청 장

1. 개정이유

- 민선6기 출범에 따라 조직개편을 통하여 조직기능 극대화
대외경쟁력을 높이고 행정서비스 향상을 이루고자 관련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창조전략기획단 신설 (안 제3조)
- 안전관리과 직제 이동(안 제4조, 제6조)
 - 도시환경국 ⇒ 자치행정국
 - 국별 분장사무 【별표1】 【별표3】 개정
- 부서 명칭변경(안 제5조)
 - 가정복지과 ⇒ 여성아동과 / 지역경제과 ⇒ 경제지원과
- 부서 통합(안 제6조)
 - 교통행정과 + 차량민원과 ⇒ 교통차량과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 11. 10(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기타사항

이 조례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단체)은 연수구청 기획예산실(☎749-70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보내실 곳

○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동춘동 923-5번지)

○ 연 락 처 : 전화 749-7082, FAX 749-7079

○ 홈페이지 : <http://www.yeonsu.go.kr/>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국 등의 설치)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자치행정국, 복지경제국, 도시환경국, 창조전략기획단,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규제개혁추진단을 둔다. 다만, 규제개혁추진단은 한시기구로 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자치행정국)①자치행정국에 총무과, 안전관리과, 교육지원과, 문화체육과, 재무회계과, 세무과, 민원지적과를 둔다.

제5조제1항 중 “가정복지과”를 “여성아동과”로 하고, “지역경제과”를 “경제지원과”로 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도시환경국)①도시환경국에 건설과, 건축과, 도시계획과, 환경보전과, 공원녹지과, 교통차량과를 둔다.

【별표1】 【별표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①「인천광역시연수구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가정복지과장”을 “여성아동과장”으로 한다.

②「인천광역시연수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가정복지과장”을 “여성아동과장”으로 한다.

③「인천광역시연수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지역경제과장”을 “경제지원과장”으로 한다.

④「인천광역시연수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지역경제과장”을 “경제지원과장”으로 한다.

⑤「인천광역시연수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도시환경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⑥「인천광역시연수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도시환경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⑦「인천광역시연수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도시환경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⑧「인천광역시연수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교통행정과장”을 “교통차량과장”으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국 등의 설치)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자치행정국, 복지경제국, 도시환경국,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규제개혁추진단을 둔다. 다만, 규제개혁추진단은 한시기구로 한다.	제3조(국 등의 설치) ----- ---자치행정국, 복지경제국, 도시환경국, 창조 전략추진단 ,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규제개혁추진단을 둔다. ----- ---
제4조(자치행정국) ①자치행정국에 총무과, 교육지원과, 문화체육과, 재무회계과, 세무과, 민원지적과를 둔다. ② 생 략 ③ 생 략	제4조(자치행정국) ①자치행정국에 총무과, 안전 관리과 , 교육지원과, 문화체육과, 재무회계과, 세무과, 민원지적과를 둔다.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5조(복지경제국) ①복지경제국에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창출과, 청소행정과, 위생관리과를 둔다. ② 생 략 ③ 생 략	제5조(복지경제국) ①복지경제국에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아동과 , 경제지원과 , 일자리창출과, 청소행정과, 위생관리과를 둔다.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6조(도시환경국) ①도시환경국에 건설과, 건축과, 도시계획과, 환경보전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차량민원과, 안전관리과를 둔다. ② 생 략 ③ 생 략	제6조(도시환경국) ①도시환경국에 건설과, 건축과, 도시계획과, 환경보전과, 공원녹지과, 교통차량과 를 둔다.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별표 1】

사 무 분 장 표 (제4조 관련)

국 명	분 장 사 무
자치행정국	1. 서무, 의전, 보안 및 청사방호에 관한 사항 2. 공무원 인사, 후생복지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특별사법경찰관리 사무에 관한 사항 4. 선거 및 국민투표에 관한 사항 5. 국민운동단체(민간단체)에 관한 사항 6. 직장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7. 일제강제동원 피해조사에 관한 사항 8. 과거사 진실규명에 관한 사항 9. 행정구역의 명칭변경 및 구역의 조정에 관한 사항 10. 공무원 및 상용노조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1. 주민자치센터운영에 관한 사항 12.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13. 재난안전관리정책 총괄·조정 14. 재난안전관리 및 재해대책의 수립, 집행에 관한 사항 15. 인적·사회적재난 대응 총괄 16. 재난 매뉴얼 통합관리 17. 재난안전교육 총괄 및 훈련, 홍보 18. 재난 피해원인 및 피해상황 조사·분석 등에 관한 사항 19. 민간자율 방재기능 강화 및 민간협력지원 등에 관한 사항 20. 정보통신망(유선, 무선, 센서망 등)고도화에 관한 사항 21. 행정정보통신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2. Smart 연수 건설(u-City 건설 등)에 관한 사항 23. u-도시통합운영센터 건설에 관한 사항 24.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5. 민방위 및 비상대비업무에 관한 사항 26. 평생학습도시에 관한 사항 27.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사항 28. 교육국제화특구 사업에 관한 사항 29. 문화예술진흥 및 관광 진흥에 관한 사항 30. 생활체육에 관한 사항 31. 여가레저활동에 관한 사항

국 명	분 장 사 무
자치행정국	32. 구비, 시비, 국비회계의 총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3. 계약심사업무에 관한 사항 34. 복식부기에 관한 사항 35. 물품(차량포함) 조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6. 국·공유재산 취득·처분·관리에 관한 사항 37. 지방세 목표액 책정 및 전망분석에 관한 사항 38. 지방세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39. 구 금고 계약에 관한 사항 40. 지방세 제도의 운영 및 세원개발에 관한 사항 41. 지방세의 수입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2. 세외수입 및 세무조사에 관한 사항 43. 개별주택 가격조사에 관한 사항 44. 기부금품 모집통제에 관한 사항 45. 문서 및 공인관리에 관한 사항 46. 기록물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47. 정보공개 신청서류 접수 통제에 관한 사항 48. 행정간행물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9. 행정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50.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51. 주민등록 및 주민전산화·외국인등록에 관한 사항 52.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사항 53. 여권발급 업무 등에 관한 사항 54. 토지관리 및 지적에 관한 사항 55.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 56. 부동산중개업에 관한 사항 57. 그밖에 다른 국·실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별표 3】

사 무 분 장 표 (제6조 관련)

국 명	분 장 사 무
도시환경국	1. 건설행정의 종합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2. 지방토목·건설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3. 도로(도로폭20M이하) 및 도로부속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하수정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하천 및 공유수면 관리에 관한 사항 6.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 7. 무허가건축물 단속에 관한 사항 8. 건축물관리대장 관리 및 전산화 발급 업무 9. 건축행정정책 정보화 업무 10. 가설건축물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11. 공동주택 재개발 및 재건축에 관한 사항 12.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3.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 14. 광고물업무에 관한 사항 15. 도시경관업무에 관한 사항 16. 도시계획사업에 관한 사항 17.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18.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사항 19. 환경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0. 자연보호활동에 관한 사항 21.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2.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23. 저탄소녹색성장 및 녹색생활실천에 관한 사항 24. 기후변화대응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5. 연수의제21실천협의회 추진에 관한 사항 26. 산림자원 보전 및 휴양기능 증대 전반에 관한 사항 27. 녹지조경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28. 도시공원 및 녹지조성 전반에 관한 사항

국 명	분 장 사 무
도시환경국	29.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30. 교통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1. 주차시설 확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2. 교통환경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 33.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사항 34.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35. 불법 주·정차 단속에 관한 사항 36. 화물 및 여객자동차에 관한 사항 37. 무단방치차량에 관한 사항 38. 자동차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39. 자동차등록에 관한 사항 40. 의무보험 미가입자 가입 촉구 등에 관한 사항 41. 기타 도시국 소관분야와 유사하거나 연관된 사무

검 토 의 견 서

관련부서	기획예산실		
의안명칭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	검 토 내 용	유	무
	1. 관계법령에 위배여부 2. 조례·규칙·훈령·예규등 위배여부 3.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 침해 여부 5. 기타 문제점		
검 토 의 견			
의견없음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연수구 정원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11월 5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청 장

1. 개정이유

- 민선6기 출범에 따른 조직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에 따라 정원 조정에 대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정원의 총수 : 665명(증1)
-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일부변경 [안 별표 3]

직 급	정 원		
	현정원	조정정원	증감
총정원	664	665	1
구청장	1	1	-
일반직계	662	662	
4급이상	6	6	
5급	47	47	
6급이하	609	609	
별정직계	1	2	1
6급 상당이하	1	2	1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11.10(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기타사항

이 조례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단체)은 연수구청 기획예산실(☎749-70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보내실 곳

-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동춘동 923-5번지)
- 연 락 처 : 전화 749-7082, FAX 749-7079
- 홈페이지 : <http://www.yeonsu.go.kr/>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665명으로 하며,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기구에 두는 정원은 다음과 같다.

1. 집행기관 : 649명
2. 의회사무기구 : 16명

【별표2】 , 【별표3】 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 분	4급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율	1%이내	8%이내	23%이내	33%이내	30%이내	5%이상

2. 별정직공무원

구 분	5급 상당 이상	6급 상당	7급 상당	8급 상당	9급 상당
비율		50%		50%	

비 고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 ·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총계	집 행 기 관					의회사무 기 구
		소계	본청	직속기관 (보건소)	사업소 (도서관)	동	
총계	665	649					16
정무직계	1	1	1				
구청장	1	1	1				
일반직계	662	646					16
3급	1	1	1				
4급	5	4	3	1			1
5급	47	45	24	7	1	13	2
6급이하	609	596					13
별정직계	2	2					
6급상당 이하	2	2	2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원의 총수)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664명으로 하며,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기구에 두는 정원은 다음과 같다. 1. 집행기관 : 648명 2. 의회사무기구 : 16명	제2조(정원의 총수)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665명으로 하며,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기구에 두는 정원은 다음과 같다. 1. 집행기관 : 649명 2. 의회사무기구 : 16명																																																																																																																																																																																										
[별표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table><tr><th>구분</th><th>4급 이상</th><th>5급</th><th>6급</th><th>7급</th><th>8급</th><th>9급</th></tr><tr><td>비율</td><td>1% 이내</td><td>8% 이내</td><td>23% 이내</td><td>33% 이내</td><td>30% 이내</td><td>5% 이상</td></tr></table> 2. 별정직공무원 <table><tr><th>구분</th><th>5급상당 이상</th><th>6급 상당</th><th>7급 상당</th><th>8급 상당</th><th>9급 상당</th></tr><tr><td>비율</td><td></td><td></td><td></td><td>100%</td><td></td></tr></table>	구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율	1% 이내	8% 이내	23% 이내	33% 이내	30% 이내	5% 이상	구분	5급상당 이상	6급 상당	7급 상당	8급 상당	9급 상당	비율				100%		[별표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table><tr><th>구분</th><th>4급 이상</th><th>5급</th><th>6급</th><th>7급</th><th>8급</th><th>9급</th></tr><tr><td>비율</td><td>1% 이내</td><td>8% 이내</td><td>23% 이내</td><td>33% 이내</td><td>30% 이내</td><td>5% 이상</td></tr></table> 2. 별정직공무원 <table><tr><th>구분</th><th>5급상당 이상</th><th>6급 상당</th><th>7급 상당</th><th>8급 상당</th><th>9급 상당</th></tr><tr><td>비율</td><td></td><td>50%</td><td></td><td>50%</td><td></td></tr></table> 비고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구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율	1% 이내	8% 이내	23% 이내	33% 이내	30% 이내	5% 이상	구분	5급상당 이상	6급 상당	7급 상당	8급 상당	9급 상당	비율		50%		50%																																																																																																																																							
구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율	1% 이내	8% 이내	23% 이내	33% 이내	30% 이내	5% 이상																																																																																																																																																																																					
구분	5급상당 이상	6급 상당	7급 상당	8급 상당	9급 상당																																																																																																																																																																																						
비율				100%																																																																																																																																																																																							
구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율	1% 이내	8% 이내	23% 이내	33% 이내	30% 이내	5% 이상																																																																																																																																																																																					
구분	5급상당 이상	6급 상당	7급 상당	8급 상당	9급 상당																																																																																																																																																																																						
비율		50%		50%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table><tr><th rowspan="2">기관별</th><th rowspan="2">총계</th><th colspan="5">집행기관</th><th rowspan="2">의회사무기구</th></tr><tr><th>소계</th><th>본청</th><th>직속기관 (보건소)</th><th>사업소 (도서관)</th><th>동</th></tr><tr><td>총계</td><td>664</td><td>648</td><td></td><td></td><td></td><td></td><td>16</td></tr><tr><td>정무직계</td><td>1</td><td>1</td><td>1</td><td></td><td></td><td></td><td></td></tr><tr><td>구청장</td><td>1</td><td>1</td><td>1</td><td></td><td></td><td></td><td></td></tr><tr><td>일반직계</td><td>662</td><td>646</td><td></td><td></td><td></td><td></td><td>16</td></tr><tr><td>3급</td><td>1</td><td>1</td><td>1</td><td></td><td></td><td></td><td></td></tr><tr><td>4급</td><td>5</td><td>4</td><td>3</td><td>1</td><td></td><td></td><td>1</td></tr><tr><td>5급</td><td>47</td><td>45</td><td>24</td><td>7</td><td>1</td><td>13</td><td>2</td></tr><tr><td>6급이하</td><td>609</td><td>596</td><td></td><td></td><td></td><td></td><td>13</td></tr><tr><td>별정직계</td><td>1</td><td>1</td><td></td><td></td><td></td><td></td><td></td></tr><tr><td>6급상당 이하</td><td>1</td><td>1</td><td>1</td><td></td><td></td><td></td><td></td></tr></table>	기관별	총계	집행기관					의회사무기구	소계	본청	직속기관 (보건소)	사업소 (도서관)	동	총계	664	648					16	정무직계	1	1	1					구청장	1	1	1					일반직계	662	646					16	3급	1	1	1					4급	5	4	3	1			1	5급	47	45	24	7	1	13	2	6급이하	609	596					13	별정직계	1	1						6급상당 이하	1	1	1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table><tr><th rowspan="2">기관별</th><th rowspan="2">총계</th><th colspan="5">집행기관</th><th rowspan="2">의회사무기구</th></tr><tr><th>소계</th><th>본청</th><th>직속기관 (보건소)</th><th>사업소 (도서관)</th><th>동</th></tr><tr><td>총계</td><td>665</td><td>649</td><td></td><td></td><td></td><td></td><td>16</td></tr><tr><td>정무직계</td><td>1</td><td>1</td><td>1</td><td></td><td></td><td></td><td></td></tr><tr><td>구청장</td><td>1</td><td>1</td><td>1</td><td></td><td></td><td></td><td></td></tr><tr><td>일반직계</td><td>662</td><td>646</td><td></td><td></td><td></td><td></td><td>16</td></tr><tr><td>3급</td><td>1</td><td>1</td><td>1</td><td></td><td></td><td></td><td></td></tr><tr><td>4급</td><td>5</td><td>4</td><td>3</td><td>1</td><td></td><td></td><td>1</td></tr><tr><td>5급</td><td>47</td><td>45</td><td>24</td><td>7</td><td>1</td><td>13</td><td>2</td></tr><tr><td>6급이하</td><td>609</td><td>596</td><td></td><td></td><td></td><td></td><td>13</td></tr><tr><td>별정직계</td><td>2</td><td>2</td><td></td><td></td><td></td><td></td><td></td></tr><tr><td>6급상당 이하</td><td>2</td><td>2</td><td>2</td><td></td><td></td><td></td><td></td></tr></table>	기관별	총계	집행기관					의회사무기구	소계	본청	직속기관 (보건소)	사업소 (도서관)	동	총계	665	649					16	정무직계	1	1	1					구청장	1	1	1					일반직계	662	646					16	3급	1	1	1					4급	5	4	3	1			1	5급	47	45	24	7	1	13	2	6급이하	609	596					13	별정직계	2	2						6급상당 이하	2	2	2				
기관별			총계	집행기관					의회사무기구																																																																																																																																																																																		
	소계	본청		직속기관 (보건소)	사업소 (도서관)	동																																																																																																																																																																																					
총계	664	648					16																																																																																																																																																																																				
정무직계	1	1	1																																																																																																																																																																																								
구청장	1	1	1																																																																																																																																																																																								
일반직계	662	646					16																																																																																																																																																																																				
3급	1	1	1																																																																																																																																																																																								
4급	5	4	3	1			1																																																																																																																																																																																				
5급	47	45	24	7	1	13	2																																																																																																																																																																																				
6급이하	609	596					13																																																																																																																																																																																				
별정직계	1	1																																																																																																																																																																																									
6급상당 이하	1	1	1																																																																																																																																																																																								
기관별	총계	집행기관					의회사무기구																																																																																																																																																																																				
		소계	본청	직속기관 (보건소)	사업소 (도서관)	동																																																																																																																																																																																					
총계	665	649					16																																																																																																																																																																																				
정무직계	1	1	1																																																																																																																																																																																								
구청장	1	1	1																																																																																																																																																																																								
일반직계	662	646					16																																																																																																																																																																																				
3급	1	1	1																																																																																																																																																																																								
4급	5	4	3	1			1																																																																																																																																																																																				
5급	47	45	24	7	1	13	2																																																																																																																																																																																				
6급이하	609	596					13																																																																																																																																																																																				
별정직계	2	2																																																																																																																																																																																									
6급상당 이하	2	2	2																																																																																																																																																																																								

검 토 의 견 서

관련부서	기획예산실		
의안명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	검 토 내 용	유	무
	1. 관계법령에 위배여부 2. 조례·규칙·훈령·예규등 위배여부 3.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 침해 여부 5. 기타 문제점		
검 토 의 견			

인천광역시연수구 공고 제2014 - 934호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년 11월 11일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상위 규정(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 등을 위한 장기재직 휴가제도 도입

2. 주요내용

- 셋째 자녀부터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 기간 전부를 재직 기간으로 산입(안 제18조 제2항)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에 대한 휴가에 관한 특례 적용(안 제18조의3)
-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 참가시 및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섭위원으로 참석시 공가 적용(안 제22조)
- 임신중인 공무원의 출산 전·후의 휴가일수 배분 사용(안 제23조 제2항)
- 임신 12주 이내 또는 임신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여성공무원에게 1일 2시간의 모성보호 시간(특별휴가) 부여(안 제23조 제4항)
- 임신중인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휴가 부여(안 제23조 제7항)

- 불임치료 받는 공무원에 대해 휴가 부여(안 제23조 8항)
- 장기 재직 공무원에게 재직기간별 휴가 부여(안 제23조 제9항)
 -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
 -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20일
 - 재직기간 30년 이상 : 20일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 12. 01(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동춘동 923-5번지)
- 연 락 처 : 전화 749-7163 FAX 749-7159
- 홈페이지 : <http://www.yeonsu.go.kr/>

라. 제출서식

제 정 (안)	사 유(구체적으로)
	(필요시 관련 근거자료 첨부)

4.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안
-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1】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재직기간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정직기간·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1. 임신·출산 또는 자녀양육을 위한 휴직(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셋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2.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3.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제18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의3(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에 대한 휴가에 관한 특례)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에 대한 휴가는 제18조, 제21조제1항·제3항 및 제23조제4항·제5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5에 따른다.

제22조 9호, 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10.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할 때

제23조제2항, 제4항, 제7항, 제8항, 제9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사산의 경험에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④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으며,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건강관리 및 태아보호를 위해 1일 1시간의 모성보호 시간을 얻을 수 있다. 다만,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⑦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⑧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⑨ 소속 기관의 장은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재직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 20년이상 30년 미만 및 30년 이상 재직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각각 20일의 휴가를 허가 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별표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5]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에 대한 휴가 기준(제18조의3 관련)

1. 휴가일수 계산 등

가. 휴가일수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는 등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日) 단위로 계산한다.

나. 휴가기간 중의 근무하지 않는 날과 공휴일(토요일을 포함한다)은 그 휴가 일수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15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다. 휴가기간을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고,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2. 연가

가. 연가는 시간 단위로 실시하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frac{\text{「연수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8조에 따른 재직기간별 연가일수}}{\times} \times \frac{\text{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text{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times 8$$

나.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해당 시간을 합산하여 연가에서 공제한다.

다. 제3호나목에 따른 병가 중 연간 3일을 초과하는 병가는 병가기간 중에 근무해야 할 시간을 연가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병가

가. 구청장은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간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해당 공무원이 감염병에 걸려 출근 시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가목의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을 합산한 시간이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또는 한시임기제공무원의 1일 평균근무시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호다목에 따라 연가에서 공제 하는 병가는 병가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하지 아니한다.

4. 특별휴가

가.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으로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연속하여 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날에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나. 생후 1년 미만의 유아가 있는 여성공무원 및 임신공무원이 연속하여 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날에는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다. 수업휴가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연가일수) ① (생략) ② 제 1항의 재직기간이라 함은 「공무원 연금법」 제23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다) 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생략) 제18조의3 <신 설>	제18조(연가일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재직기간이라 함은 「공무원 연금법」 제2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정직기간·직위해제 기간 및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1. 임신·출산 또는 자녀양육을 위한 휴직(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셋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2.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3.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③ 현행과 같음 제18조의3(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에 대한 휴가에 관한 특례)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에 대한 휴가는 제18조, 제21조제1항·제3항 및 제23조제4항·제5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5에 따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공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 8. (생략) <신 설> <신 설>	제22조(공가) ----- ----- ----- ----- 1. ~ 8. (현행과 같음) 9.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10.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할 때
제23조(특별휴가) ① (생략) ② 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23조(특별휴가) ① (현행과 같음) ②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 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③ (생략) ④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 시간을 얻을 수 있으며,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건강관리 및 태아보호를 위해 1일 1시간의 모성보호 시간을 얻을 수 있다. ⑤ ~ ⑥(생략)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③ (현행과 같음) ④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으며,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건강관리 및 태아보호를 위해 1일 1시간의 모성보호 시간을 얻을 수 있다. 다만,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⑤ ~ ⑥ (현행과 같음) ⑦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⑧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 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⑨ 소속 기관의 장은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재직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 20년이상 30년 미만 및 30년 이상 재직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각각 20일의 휴가를 허가 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5] <u><신 설></u>	[별표 5]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에 대한 휴가 기준(제18조의3 관련) 1. 휴가일수 계산 등 가. 휴가일수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는 등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日) 단위로 계산한다. 나. 휴가기간 중의 근무하지 않는 날과 공휴일(토요일을 포함한다)은 그 휴가 일수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15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다. 휴가기간을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고,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2. 연가 가. 연가는 시간 단위로 실시하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frac{\text{「연수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8조에 따른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times \text{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text{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나.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해당 시간을 합산하여 연가에서 공제한다. 다. 제3호나목에 따른 병가 중 연간 3일을 초과하는 병가는 병가기간 중에 근무해야 할 시간을 연가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병가 가. 구청장은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간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해당 공무원이 감염병에 걸려 출근 시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가목의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을 합산한 시간이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또는 한시임기제공무원의 1일 평균근무시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호나목에 따라 연가에서 공제 하는 병가는 병가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하지 아니한다. 4. 특별휴가 가.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으로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연속하여 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날에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나. 생후 1년 미만의 유아가 있는 여성공무원 및 임신공무원이 연속하여 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날에는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다. 수업휴가는 실시하지 아니한다.